##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

(일반연구지원팀, '16.2.25)

## □ 관련 규정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(2015.12.23. 개정)
- 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...
- 제12조의2(연구개발비의 사용)
  -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(이하 이 항에서 "원래계획"이라 한다)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<개정 2013.2.22., 2013.9.26., 2015.12.22.> (중략)
  - 5. <u>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</u>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-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
- ★ 교육부 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...
- 제26조(연구개발비의 변경)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(이하 이항에서 "원래계획"이라 한다)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중략)
- 5. <u>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</u> 원래계획보다 5%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

## □ 안내 내용

- 공동관리규정과 교육부 소관 처리규정의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내용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, <u>교육부 소관 처리규정 개정 전까지는</u> <u>상위 규정(공동관리규정)에 따라 적용 가능</u>
- 협조 요청사항
  - 주관연구기관에서 학생인건비 5% 이상 변경으로 인한 연구계획 변경 신청 시 변경금액 확인 후 신청 요망